
항목:	<u>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u>	발행: 10/30/14	번호:	D-140
제목:	공석 충원을 포함한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발 절차		페이지:	1 중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서는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2012년 6월 26일자 교육감 규정서 D-140을 갱신 및 대체합니다.

변경내용:

- 최근 개정된 뉴욕주 교육법에 따라 "ELL 학부모"의 정의가 현재 영어학습학생 또는 지난 2년 중 영어학습학생이었던 아동의 부모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페이지 2, 섹션 II.D 참조)

개요

모든 커뮤니티 학교 학군은 반드시 11명의 투표 위원과 1명의 비투표 학생 위원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CEC)를 운영해야 한다. 9명의 투표 위원은 본 규정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반드시 선출 당시 커뮤니티 학교 학군 내의 학교에서 유치원-8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나머지 2명의 투표 위원은 보로장이 지명한다. 본 규정서는 자격 요건 및 CEC의 위원 선출과 관련된 추천 및 선출 절차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제공한다. 각 CEC는 뉴욕 공개회의 법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I. 자격 요건

A. 학부모

1. 학부모가 ¹봉사하고자 하는 CEC 관할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학교에 현재 유치원에서 8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CEC에 자가추천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학부모가 CEC 직위 입후보를 위한 지원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원 접수시 자격을 가진 학부모는 선출될 경우 자녀가 임기 도중 8학년을 졸업 및/또는 커뮤니티 학교 학군 관할 학교에 더이상 재학하지 않을 경우에도 CEC에서 2년간 봉사할 수 있다.²
2.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 a.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당의 선출 또는 임명 보직(전국, 주, 법원 또는 기타 정당 협의회의 의원 또는 대의원, 카운티 위원회 위원은 제외)에 있는 사람;
 - b. 현재 교육청에 고용된 직원;
 - c.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커뮤니티 학교 이사회, CEC 또는 뉴욕시 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이런 이사회 또는 위원회 업무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및
 - d. 다른 CEC 또는 뉴욕시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사람.
3.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봉사 자격이 없습니다:
 - a. 교육 정책 패널 위원;

¹ 학부모란 부모 (출산 또는 입양, 의붓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법률적인 보호자 또는 아이와 부모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으로 정의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대신에 정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² CEC에서 봉사할 모든 학부모 위원은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관할 하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지난 2년간 커뮤니티 학교 학군 관할 학교에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합니다.

- b. PA/PTA, 학교 리더십 팀, 학군 회장 위원회, 보로 고등학교 협의회 또는 타이틀 I 위원회에서 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인해 제명당한 사람 또는 그러한 단체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및
- c. 뉴욕시 교육청 윤리 담당관 또는 교육감이 지명한 다른 자에 의해 뉴욕시 이해관계 상충법에 의거, 위원회와 금전상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B. 학생

봉사하는 학년도에 12학년에 재학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학교 학군에 거주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회에 선출된 고등학교 학생은 커뮤니티 교육장의 지명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학생은 봉사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학교 학군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하지 않아도 된다. 선출된 학생회에 12학년 학생이 없을 경우 기타 선출을 통한 리더십 직위 (클럽 회장 등)를 수행하는 12학년 학생이 고려된다.

II. 학부모 추천

- A. CEC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가추천이 완료된다: <http://www.nycparentleaders.org>. 후보자는 한 개 이상의 커뮤니티 및/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지원할 수도 있다. 복수 지원은 허용되나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는 없다. 신청 접수시 복수의 위원회에서 봉사하고자 지원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명시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 조건부 선출된 후보자는 조건부 선출된 위원회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명시한 위원회에 배치된다.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부(FACE)는 신청서 제출일정을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http://www.nycparentleaders.org>.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학부모들은 FACE에 연락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학교 및 로컬 기관들의 목록에 대해 문의한다.
- B. 후보자는 현재 자녀가 재학중인 커뮤니티 학교 학군 관할 각 학교에 대한 정보를 지원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후보자는 각 학교의 대표로 간주된다. 후보자가 대표할 각 학교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교육감 재량에 따라 자격박탈의 사유가 된다.
- C. 개별교육 프로그램 (IEP)를 가진 학생의 학부모를 위해 확보된 의석을 충원하기 위해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자는³ (이후 "IEP 학부모"로 지칭) 반드시 지원서에 본인이 IEP 학부모임을 확인하는 관련 정보의 공개 동의를 명시하여야 한다.
- D. 영어학습학생(ELL)의 학부모를 위해 확보된 의석을 충원하기 위해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자는⁴ (이후 "ELL 학부모"로 지칭) 반드시 지원서에 본인이 ELL 학부모임을 확인하는 관련 정보의 공개 동의를 명시하여야 한다.

³ 개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학생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다.

⁴ 영어학습학생은 이중언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이다.

- E. 각 후보의 지원서 중 일부(성명,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자기 소개 및 경력, 출마 소견 등)는 <http://www.nycparentleaders.org> 에 게시되어 학부모 및 일반 대중이 볼 수 있게 한다. IEP 학부모 또는 ELL 학부모로서의 후보 자격은 입후보자가 지원서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분명히 명시한 경우 게시된다.

III. 선출자(SELECTOR)

각 CEC 학부모 위원 선출자는 교육감 규정서 A-660에 명시된 커뮤니티 학교 학군에 위치한 각 학교의 PA/PTA 임원 3인 (회장, 서기, 회계)으로 구성된다.⁵ PA/PTA 회장 및 임원 중 선출 절차에 입후보 하는 사람은 선출자로 참여할 수 없다. PA/PTA는 선출 절차에서 입후보 하는 회장 또는 임원을 대리할 위원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IV. 후보자 포럼 절차

- A. 각 커뮤니티 학교 학군에서 학군 회장 위원회는 FACE와 협력하여 CEC에서 봉사할 후보자들이 선출자 및 기타 학부모와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후보자 포럼을 주관한다.
- B. 후보자 포럼은 반드시 후보자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 그러나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5월 두번째 화요일 지명된 선출자가 투표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회장 위원회는 후보자 포럼이 진행될 교육청 장소, 날짜 및 적절한 시간을 결정하고 후보자 포럼 진행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한다. FACE에서 후보자 포럼과 관련된 모든 필수 허가서 취득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C. FACE는 후보자 포럼에서 배포될 해당 학군 CEC 경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의 성명과 개인 성명을 포함한 학군별 후보자 책자 사본을 회장 위원회에 제공한다. FACE는 필요하다면 후보자 포럼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 지원을 한다.

V. 선출 절차

- A. 학부모 위원 선출 (투표)
1. 선출자들은 반드시 <http://www.nycparentleaders.org> 에 로그인하여 투표해야 한다. 로그인 한 후, 선출자는 해당 학군의 CEC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의 성명을 포함한 투표권을 제공받게 된다. 각 선출자는 두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FACE는 투표용지 제출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선출자에게 제공한다.
 2. CEC 위원을 선출할 때 선출자는 반드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a. 커뮤니티의 단면을 대표하고 특수 교육 필요를 가진 학생을 포함한 학생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원; 및
 - b. 학군의 등록 현황 및 학교 별 등록 편차를 고려.
 3. CEC의 9명의 학부모 위원 (투표권 보유) 직위 중 적어도 1석은 IEP 학부모로 충원되며

⁵ 공동 회장, 공동 서기 또는 공동 회계의 경우 나머지 PA/PTA 임원회 회원들이 어떤 임원이 선출자로 봉사할지 결정한다.

적어도 1석은 ELL 학부모로 충원되어야 한다. 나머지 7석은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학부모로 구성된다.

4. 투표 결과를 기록할 때:

a. 가장 득표수가 많은 7인의 후보가 조건부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섹션 V.A.4.c에 제공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떤 학교도 CEC에 1인 이상의 대표를 갖지 않도록 한다. 만약 동일한 학교에서 한 명 이상의 후보가 선출되었다면, 더 많은 투표를 받은 후보가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더 적은 투표를 받은 해당 학교의 다른 후보자는 고려에서 제외되며 아직 CEC에 대표를 보유하지 못한 학교의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b. IEP 학부모 및 ELL 학부모가 가장 많은 득표로 조건부 선출된 7인에 포함된 경우 이미 선출되지 않은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2명이 CEC의 나머지 2석의 위원으로 조건부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IEP 학부모 또는 ELL 학부모가 가장 많은 득표로 조건부 선출된 7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IEP 학부모(이미 IEP 의석이 조건부 충원되지 않은 경우)와 ELL 학부모(이미 ELL 의석이 조건부 충원되지 않은 경우)가 조건부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섹션 V.A.4.c에 제공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떤 학교도 CEC에 1인 이상의 대표를 갖지 않도록 한다. 가장 많은 득표로 조건부 선출된 학부모와 같은 학교에 소속된 IEP 학부모 및/또는 ELL 학부모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CEC에 대표를 보유하지 못한 학교에 소속된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얻은 IEP 학부모 및/또는 ELL 학부모가 조건부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IEP 학부모이자 ELL 학부모인 후보는 IEP 학부모 또는 ELL 학부모를 위해 지정된 의석 중 하나를 충원할 수 있으며 2개의 의석을 동시에 채울 수 없다.

c. 섹션 V.A.4.a 및 V.A.4.b에 설명된 제안 내용은 해당 제안 규정을 적용했을 때 CEC에 아홉 명 이하의 학부모 위원이 선출되거나 IEP 또는 ELL 학부모가 선출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2인 또는 그 이상의 후보자가 동일한 투표를 얻거나 또는 처음에 아홉 명 이하의 후보자가 선출된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런 경우, 각 선출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한다.

a. CEC 위원석의 한 석 또는 그 이상의 동일한 투표로 인해 재선거가 필요할 때, 동일한 투표수를 얻었던 후보자들만이 결선 투표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b. IEP 학부모가 득표하지 못해 결선투표가 필요한 경우 IEP 학부모인 후보자만이 IEP 의석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ELL 학부모가 득표하지 못해 결선투표가 필요한 경우 ELL 학부모인 후보자만이 ELL 의석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c. 섹션 V.A.4.a 및 V.A.4.b 에 정해진 바와 같은 학교에서 복수의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어 1개 이상의 의석이 충원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이미 선출되지 않고 CEC에서 활동하는 대표가 없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모든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입후보할 자격을 가진다. 결선 투표의 실패가 모든 의석을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섹션 V.A.4.c에 정해진 예외가 적용된다.

- d. 섹션 V.A.5.a, V.A.5.b 및 V.A.5.c에 정해진 바 외의 이유로 한 석 또는 그 이상의 의석이 공석으로 남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아직 선출되지 않은 모든 후보자는 결선 투표에서 선출될 자격이 있다.
 - e. 상기 섹션 V.A.5.a, V.A.5.b, V.A.5.c 및/또는 V.A.5.d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번의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여러번의 결선 투표는 동일한 시간에 섹션 V.A.5.a, V.A.5.b, V.A.5.c. 및 V.A.5.d 요건을 준수하는 후보자 그룹 별로 각기 다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f. 만약 결선 투표 절차를 통해서도 모든 의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청을 위해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상기 섹션 V.A.5.a, V.A.5.b, V.A.5.c 및 V.A.5.d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격 사항에 대한 동일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추첨을 통해 위원을 결정한다. 그러나 최초 선출 절차와 결선 투표에서 표를 전혀 얻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 본 규정서의 섹션 IX.A.2 및 IX.A.3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위원회의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둔다.
6. 선출된 후보자가 선출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 그러나 선거가 실시된 해의 6월 25일 및 이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게 된다면, CEC에 대표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에 소속되고 최초 선출 절차에서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⁶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게된 후보가 유일한 IEP 학부모일 경우 CEC에 대표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에 소속되고 최초 선출 절차에서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IEP 학부모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게된 후보가 유일한 ELL 학부모일 경우 CEC에 대표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에 소속되고 최초 선출 절차에서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ELL 학부모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위에 명시된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 동점이 되는 경우, 교육청을 위해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첨을 통해 위원을 결정한다. 만약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보가 없는 경우, 본 규정서의 섹션 IX.A.2 및 IX.A.3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둔다.
7.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B. 보로장 임명

보로장은 투표권을 가진 2인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⁷ 2명의 위원은 반드시 학군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소유 또는 운영하고 비즈니스, 교역 또는 교육 경험 및 지식을 가진

⁶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6월 25일 이후에 실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규정서 섹션 IX.A.2 및 IX.A.3 에 명시된 공석 처리 절차가 적용된다.

⁷ 본 규정서 섹션 I.A.2 및 I.A.3 은 또한 보로장의 지명인에도 적용된다.

사람이어야 한다. 보로장 임명 위원은 2년간 봉사하며 1회에 한하여 추가 2년의 임기로 재임명될 수 있다.⁸ 보로장의 지명을 원하는 CEC 후보자는 보로장의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얻어 보로장의 사무실에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C. 학생 위원 지명 (투표권 없음)

커뮤니티 교육장은 커뮤니티 학교 학군 내에 거주하고 소속 학교에서 선출된 학생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고등학교 12학년생 1인을 CEC에 비투표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커뮤니티 교육장은 자격을 갖춘 학생의 목록을 받아 그 중 지명하게 된다. 선출된 학생회에 봉사할 12학년 학생이 없는 경우 교육 및 학습 담당부에서는 교육장 임명을 위해 학군에 거주하는 다른 선출직 리더십 직위로 활동하는 12학년 학생을 모색한다.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VI. 조건/자격의 검토

후보자의 조건부 선출 이후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명인은 후보자가 CEC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교육감이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면, 법에 따라 FACE 중앙 사무실에서 교육감의 결정 내용이 공적인 조사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표후 7일 내 제공될 것이다. 해당 결정에는 이런 발표에 대한 사실 및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모든 후보자는 CEC에 이미 대표를 선출한 학교가 아닌 학교의 후보자인 경우 다음으로 가장 높은 표를 얻은 후보자로 대체된다.

VII. 일정

CEC 위원은 2011년 5월 두 번째주 화요일 선출되며 이 후 매 2년 후에 6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가 실시된다. 선출 절차는 90일간 진행된다. 여기에는 절차의 대중 공개가 허용되는 시간, 학부모 후보, 후보 포럼 및 선출자의 투표 기간이 포함된다. CEC의 역할, 기능,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지원과 선출 절차에 대한 정보는 선출 절차가 실시되는 학년도 1월에 배포된다. FACE는 이 규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정확한 일정을 게시한다.

VIII. 사직

A. 학부모 위원

학부모 위원 사직은 반드시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교육감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의 수석 가정 참여 담당관이 교육감 대리인 사직서를 접수하도록 지명한다. 이런 사직서는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부의 수석 가정 참여 담당관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날 이후 30일 이내의 향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다.

⁸ 본 규정서 섹션 IX.A.4에 따라 2년 이하의 부분 임기로 보로장에게 지명되어 공석을 충원하게 된 사람의 경우 부분 임기는 보로장 지명인 임기 제한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2회의 완전한 임기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보로장 지명인으로 이전에 봉사한 사람은 보로장 지명으로 공석을 충원할 수 없다.

B. 보로장 지명인

보로장 임명 위원의 사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자신을 임명한 보로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런 사직서는 지명한 보로장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날 이후 30일 이내의 향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보로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다.

C. 학생 위원

학생 위원 사직은 반드시 지명한 커뮤니티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런 사직서는 지명한 커뮤니티 교육장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날 이후 30일 이내의 향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커뮤니티 교육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다.

IX. 공석

A. 학부모 및 보로장 지명 위원의 공석

1. 만약 CEC 위원이 본인의 임기 동안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통보하고 CEC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참할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직책에서 제명 된다.⁹ 각각의 불참과 서면으로 제공한 이유는 회의의 공식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로장이 지명한 위원의 모든 불참은 CEC의 업무 총괄(Administrative Assistant) 또는 회장이 보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적절한 사유가 없이 3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CEC는 정기 회의에 해결 방안으로 공석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교육감(적용되는 경우 공익 옹호실)에게 이런 상황을 통보한다.
2. 임기가 남아 있는 CECL의 위원석에 공석이 발생하면, CEC는 공개 회의에서 공석을 채운다.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회장 위원회 및 기타 교육 그룹은 학부모 공석 충원을 위한 추천을 서면으로 표명하고 충원 전 CEC와 논의할 기회를 가진다. 공석으로 인해 최소 1인의 ELL 학부모 또는 최소 1인의 IEP 학부모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CEC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학부모를 선정해 공석을 충원한다. IEP 학부모 또는 ELL 학부모의 공석 충원 선출 전 CEC는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또는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와 논의한다. CEC의 학부모 위원 공석을 채우는데 관심 있는 모든 개인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CEC 또는 FACE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3. 만약 후보간에 동일한 표를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60일 내에 CEC에서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의 투표로 위원을 결정한다. 다른 이유로 CEC가 60일 이내에 공석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법 섹션 2590-10에 따라 CEC 공석 충원을

⁹ 유효한 불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친척의 사망 또는 친척의 장례식 참석, CEC 위원 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배심원 소환을 포함한 의무적인 법원 출석, 군인의 의무, CEC 회의 불참을 피할 수 없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 발생 및 기타 CEC에서 적절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

지시한다.

4. 보로장이 지명한 위원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보로장이 남은 임기 동안 활동을 할 위원을 지명한다. 보로장 지명 위원의 공석을 채우길 원하는 후보자는 보로장의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얻어 보로장의 사무실에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B. 학생 위원 공석

학생 위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커뮤니티 교육장은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할 자격을 가진 학생 중 다른 12학년 학생을 지명한다. 교육장은 FACE 및 CEC에 지명에 대해 통지한다.

X. 불만제기 절차

본 규정의 준수에 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지 5일 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게 된 특정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XI. 기술적 지원

FACE에서 본 규정서에 포함된 절차의 실행에 관해 총괄하며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전화: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 N.Y.C. Department of Education 49 Chambers Street – Room 503 New York, NY 10007	팩스:
212-374-2323		212-374-0076